

직원징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가천학원정관 제93조에 의하여 본 법인에 설치한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4급 이상의 직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는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5조(소집과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임명권자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서(별지서식 제1호)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함과 동시에 징계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를 기재한 출석통지서(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별지서식 제1호)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30일의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척)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기피 등) ①징계대상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6-1-8~2 제6편 위원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0조(임시위원의 임명)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대상자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징계의결) ①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별지서식 제3호)를 작성하고 이를 즉시 임명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임명권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④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별지서식 제4호)를 당해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정상참작 등)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5조(재심청구) 직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②간사와 서기는 직원 중에서 그 임면권자가 임명한다.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징계의결 요구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소 속		직 위 (급)	
		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재 직 기 간	
징 계 사 유							
징 계 의 결 요 구 권 자 의 의 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학교법인가천학원 이사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출석통지서

인 적 사 상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출 석 이 유					
출 석 일 자		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					
유 의 사 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귀하			

(절 취 선)

진술권 포기서

인 적 사 상	성 명	한 글		소 속	
		한 자		직 위(급)	
	주 소				
본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징계위원회 귀하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3호)

징 계 의 결 서

징계혐의자 인 적 사 항	소 속	직 위(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징계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서식 제4호)

징계 처분 사유 설명서		
소 속	직 위(급)	성 명
주 문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학교법인 가천학원 이사장		
귀하		